#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02

발의연월일: 2024. 9. 27.

발 의 자:고민정・이기헌・박민규

박희승 · 정을호 · 이광희

김영호 • 윤건영 • 백승아

문금주 · 임호선 · 김문수

문정복・양부남・강준현

김 윤 · 문대림 · 강경숙

박지원 · 정성호 · 오세희

이원택 • 채현일 • 윤준병

송재봉 의원(2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2023년 10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법에 따라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시키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를 개정함. 교육부는 동 규정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가 법적 지위를 얻었다고 밝힘.

그러나 헌법상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비춰볼 때,「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미비한 측면이 있으므로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의 필요성 제기됨.

한편,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싸고 학생의 문해력 하락, 스마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막대한 예산 투입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024년 7월, 초·중·고자녀를 둔 전국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디지털교과서도입에 대한 학부모 인식 조사」결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신중히검토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9.6%로 나타났음. 학부모의 82.1%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이에 AI 디지털교과서가 갖는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의정의 및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 "(교과용 도서의 사용)"을 "(교과용 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을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으로 한다.

- ① "교과용 도서"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 중 국가가 저작 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것을 말한다.
-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
-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

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

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이하 "전자책"이라 한

다)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운 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전자책을 사용함으로써 교과서 또는 지도서의 사용을 대신할 수 있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교육 자료"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를 선정하기 위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용 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중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에는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자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를 "도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②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재 및"을 "교육"으로 한다.

③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용"을 각각 "교육"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신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교과용		
<u>설&gt;</u>	도서"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 중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		
	정하거나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		
	<u>용의 도서</u>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		
	<u>용의 도서</u>		
<u>&lt;신 설&gt;</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		
	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		
	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		
	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		
	한 전자책(이하 "전자책"이라		
	한다)을 포함할 수 있다.		
① 학교에서는 <u>국가가 저작권</u>	③ 제1항에 따른		
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u>검정하거나 인정한</u> 교과용 도서 를 사용하여야 한다. <u><단서 신</u> <u>설></u>

② 교과용 도서의 <u>범위·저작·</u> <u>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u>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신 설>

④ ----- <u>저작·검정·</u> <u>인정·발행·공급·선정</u> ----

\_\_\_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교육 자료"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 어
-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 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